

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불어넣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26.2.10.시행
-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한도 상향, 현장 애로 반영한 제한 규정 완화 등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①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①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②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발전수준별로 지역을 상·중·하위지역으로 구분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 지방 제조기업의 AX(MAX) 추진과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원

또한 ①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②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여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완화

아울러 기업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①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6년 2월 10일(화)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봉석 (044-203-4420)
		담당자	주무관	이현식 (044-203-4429)

①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중심의 지원 강화

○ 보조금 지원한도 및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지원한도	• 투자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 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에는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한도 상향
입지보조금	• 지방이전 중견·중소기업만 지원	• 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에는 지방이전 대기업에도 지원
	• 신·증설 투자시 입지보조금 지원 無	• 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에 신·증설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입지보조금 지원

② 지방 제조기업의 AX(M.AX) 추진과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지원

○ (M.AX 확산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인공 지능분야 세부기술* 활용 투자 대상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 생성형AI기술, 에이전트AI기술, 학습·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 AI컴퓨팅 기술 등

○ (근로환경개선시설 지원 강화) 근로자 편의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범위 확대

* (現) 지투보조금 산정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은 건설설비 투자비용의 10% 범위 내 인정
→ (改) 건설설비 투자비용의 20% 범위 내로 확대

③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조금 관련 제한 규정 완화

○ (투자기간 제한 완화)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자 지연시, 투자기간 연장 기회 부여

* (現) 투자기간 최대 3.5년 → (改) 1.5년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기회 부여(심의위)

** 투자기간 연장 신청 시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만 심의위 상정

[예시] (C社) 전기차 캐즘 등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 투자기간 연장이 최대 3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기간 내 투자를 완료하지 못할 시 환수될 수 있는 상황

○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준 완화) 투자 또는 고용달성률 70% 미만시 불가피한 사유를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재신청 허용

** (現) 심의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 인정시(1년 제한)→ (改) 제한기간 없음

[예시] (A社) 보조금 지원받은 이후, 비용절감으로 투자 달성률 70퍼센트 미달하여 3년간 보조금 재신청 제한 → 최근 신규투자 계획 중이나 보조금 신청 못하는 상황

붙임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요

□ (개념)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 지원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 시행령 제23조, 지투보조금 지원기준(고시)

○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시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입지보조금)와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설비보조금)를, 지방 신·증설 투자시 설비보조금을 지원

* 예산액(억원) : ('23) 2,031 → ('24) 2,126 → ('25) 2,261 → ('26) 2,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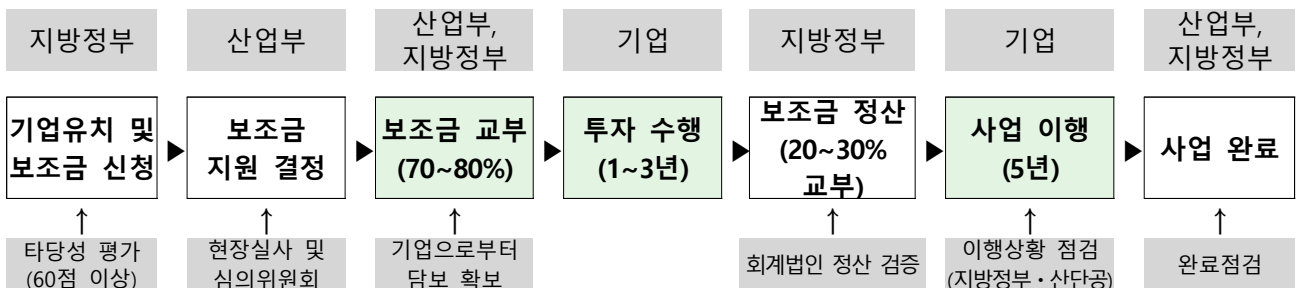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 : 지방비)
균형발전 상위지역 (22개)	- (설비) 4%	(입지) 5% (설비) 6%	(입지) 9% (설비) 8%	45 : 55
균형발전 중위지역 (83개)	- (설비) 6%	(입지) 15% (설비) 8%	(입지) 30% (설비) 10%	65 : 35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입지) 20% (설비) 9%	(입지) 25% (설비) 12%	(입지) 40% (설비) 15%	75 : 25
산업위기 대응지역	(입지) 25% (설비) 12%	(입지) 30% (설비) 20%	(입지) 50% (설비) 25%	75 : 25

*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 : 투자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상·중위지역} / 기업당 300억원^{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 (지원절차)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 (사업 성과) '04~'25년간 총 1,596개 기업에 2조 7,439억원 투입(국비기준)

➔ 약 36.3조원의 투자와 8만1천여명의 고용 유도